

의안번호	2209381
의 퇴 인	조지연의원
회 답 일	2025.4.9.
추계번호	25D193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56억 400만원, 2030년 855억 2,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105억 200만원(연평균 821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보훈병원 (안 제7조제1항)	14,120	14,281	14,474	14,702	14,963	72,540	14,508
위탁병원 (안 제7조제2항)	61,484	65,965	69,689	70,263	70,561	337,962	67,592
합계	75,604	80,246	84,163	84,965	85,524	410,502	82,10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7조(의료지원)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항)	의무규정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이 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항)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7조(의료지원)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감면진료비 지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참전유공자 유가족 감면진료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감면진료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표 2] 현행법과 개정안의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의료지원 비교

구분	보훈병원		위탁병원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참전유공자 유가족	미지원	지원	미지원	75세 이상 지원

자료: 국가보훈부

- 본 추계에서 참전유공자의 자녀는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한정하여 감면진료의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함

- 자녀의 경우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불가능하므로 제외
- 국가보훈부의 ‘보훈대상자 성별 인원현황’(2025.2.28.)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중 여성(1,230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규모가 미미(0.61%)하므로, 본 추계에서 참전유공자는 남성이고, 그 배우자는 전원 여성으로 가정

- 보훈병원 감면진료의 추가재정소요 산출 시, 감면대상 인원, 수진횟수, 감면진료비 단가는 다음의 변수를 적용하여 추정함

- 배우자 인원: 현행법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 참전유공자(2023년 기준 612,286명)를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수를 적용하여 추정
 - 생존 참전유공자(172,853명): 무공수훈자의 유배우자율(72.06%)과 연도별 사망률 적용
 - 제적 참전유공자(439,433명): 배우자와의 연령차(3세), 배우자 생존율(6·25참전유공자 42.66%, 월남전 참전유공자 80.81%), 연도별 사망률 적용
- 수진횟수: 진료비의 60%를 감면받는 국가유공자의 연평균 수진횟수를 적용
- 감면단가: 감면진료비 단가(2023년 기준)에 최근 5년 연평균증가율을 적용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배우자 보훈병원 감면진료(안 제7조제1항)

- 배우자 보훈병원 감면진료의 추가재정소요는 보훈병원 감면진료의 대상으로 추가되는 배우자 인원에 감면진료비 단가와 수진횟수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2023년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는 612,286명이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3] 현행법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2023.12.

(단위: 명)

구분		6·25전쟁	월남전쟁	6·25전쟁 및 월남전쟁	합계
생존	참전유공자	33,499	89,452	413	123,364
	고엽제의증환자	—	49,489	—	49,489
	소계	33,499	138,941	413	172,853
제적	참전유공자	357,487	32,002	781	390,270
	고엽제의증환자	—	49,163	—	49,163
	소계	357,487	81,165	781	439,433
합계		390,986	220,106	1,194	612,286

주: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한도의용군인 등 자격이 복합 등록된 인원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기준 참전유공자 인원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보훈병원 감면 진료 대상으로 추가되는 배우자 인원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 생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추정: 생존 참전유공자 인원[2023년 기준, 6·25 참전유공자 33,912명(평균 91세), 월남 참전유공자 138,941명(평균 76세)]에 무공수훈자의 유배우자율(72.06%)¹⁾를 적용하여 추정함

1) 생존 무공수훈자 본인 및 배우자 현황: 2023.12. 기준

	본인(A)	배우자(B)	유배우자율(B/A)	비고
인원	14,049명	10,123명	72.06%	국적상실자 제외

자료: 국가보훈부

[표 4] 생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인원 추정: 2023년

(단위: 명)

구분	6·25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유공자	유배우자율	배우자 추정	참전유공자	유배우자율	배우자 추정
인원	33,912	72.06%	24,437	138,941	72.06%	100,121

주: 6·25전쟁과 월남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6·25 참전유공자로 합산하고, 고엽제피해환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합산하였음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제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추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연령을 추정(2023년 기준, 6·25 참전유공자 88세, 월남 참전유공자 73세)²⁾한 후 생존율을 적용함

[표 5] 제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생존 인원 추정: 2023년

(단위: 명)

구분	6·25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남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유공자 ¹⁾	생존율 ²⁾	생존 배우자	참전유공자 ¹⁾	생존율 ³⁾	생존 배우자
인원	358,268	42.66%	152,837	81,165	80.81%	65,589

주: 1) 6·25전쟁과 월남전쟁 모두 참전한 유공자는 6·25 참전유공자로 합산하고, 고엽제피해환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합산하였음

2) 2023년 기준 88세 여성 인구수(86,326명)를 1970년 30~39세 구간(평균 35세)의 1세별 평균 여성 인구수(202,356명)로 나누어 산출함

3) 2023년 기준 73세 여성 인구수(221,986명)를 1975년 20~29세 구간(평균 25세)의 1세별 평균 여성 인구수(274,707명)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통계청의 '성·연령·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와 '행정구역 시군구별·1세별 주민등록인구'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상의 생존 참전유공자와 제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인원을 합산하여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6]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인원 추정: 2023년

(단위: 명)

구분		6·25전쟁	월남전쟁	합계
배우자 인원	생존 참전유공자	24,437	100,121	124,558
	제적 참전유공자	152,837	65,589	218,426
합계		177,274	165,710	342,984

자료: 국가보훈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기준 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 배우자 인원(342,984명)에 통계청 발표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감면진료 대상 인원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2) 2023년 기준 참전유공자의 연령(6·25 참전유공자 91세, 월남 참전유공자 76세)에서 3세를 차감함

[표 7] 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 배우자 인원: 2023~2030년

(단위: 명)

구분		2023	2026	2027	2028	2029	2030
감면진료 배우자	6·25 참전유공자	177,274	134,648	123,110	112,669	103,232	94,672
	월남 참전유공자	165,710	161,638	160,370	159,142	157,961	156,816
합계		342,984	296,286	283,480	271,811	261,193	251,488

주: 통계청 발표(2023) '장래 성 및 연령별 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자료: 국가보훈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결산기준 보훈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67,249원에 연평균 증가율(5.71%)³⁾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감면진료비 단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8] 보훈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2023~2030년

(단위: 원)

구분	2023	2026	2027	2028	2029	2030
감면진료비 단가	67,249	79,428	83,960	88,750	93,814	99,166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보훈병원 감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725억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배우자 보훈병원 감면진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감면진료 신규인원(a, 명)	296,286	283,480	271,811	261,193	251,488	—
수진횟수(b, 회) ⁴⁾	0.6	0.6	0.6	0.6	0.6	—
감면진료비 단가(c, 원)	79,428	83,960	88,750	93,814	99,166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14,120	14,281	14,474	14,702	14,963	72,5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보훈병원 감면진료비(60%) 단가: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감면진료비 단가	53,864	62,974	64,394	66,795	67,249	5.71%

자료: 국가보훈부

4) 보훈병원 감면진료(60%) 대상자의 수진횟수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수진횟수	0.6	0.6	0.6	0.6	0.6	0.6

자료: 국가보훈부

나. 배우자 위탁병원 감면진료(안 제7조제2항)

- 배우자 위탁병원 감면진료의 추가재정소요는 위탁병원 감면진료의 대상으로 추가되는 배우자 인원에 감면진료비 단가와 수진횟수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2023년 기준 보훈병원 감면진료 대상 배우자 인원(342,984명)에 75세 이상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감면진료 대상 인원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10] 위탁병원 감면진료 대상 배우자 인원: 2023~2030년

(단위: 명)

구분	2023	2026	2027	2028	2029	2030
배우자 인원 (합계)	342,984	296,286	283,480	271,811	261,193	251,488
75세 이상 비율	—	85.79%	92.67%	98.35%	99.40%	99.86%
감면진료 실인원	—	254,193	262,700	267,326	259,622	251,148

주: 75세 이상 비율은 2023년 기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비율(88.97%)을 기준으로, 배우자 연령과 무공수훈자 사망률(8.1%)을 적용하여 추정함

자료: 국가보훈부와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23년 결산기준 위탁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22,756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3.81%)⁵⁾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감면진료비 단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11] 위탁병원 감면진료비 단가: 2023~2030년

(단위: 원)

구분	2023	2026	2027	2028	2029	2030
감면진료비 단가	22,756	25,461	26,432	27,441	28,488	29,574

자료: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탁병원 감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379억 6,200만원으로 추계됨

5) 위탁병원 감면진료비(60%) 단가: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증가율
감면진료비 단가	19,591	21,721	20,261	24,360	22,756	3.81%

자료: 국가보훈부

[표 12] 배우자 위탁병원 감면진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감면진료 신규인원(a, 명)	254,193	262,700	267,326	259,622	251,148	—
수진횟수(b, 회) ⁶⁾	9.5	9.5	9.5	9.5	9.5	—
감면진료비 단가(c, 원)	25,461	26,432	27,441	28,488	29,574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61,484	65,965	69,689	70,263	70,561	337,9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56억 400만원, 2030년 855억 2,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105억 200만원(연평균 821억원)으로 추계됨

[표 1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보훈병원 (안 제7조제1항)	14,120	14,281	14,474	14,702	14,963	72,540	14,508
위탁병원 (안 제7조제2항)	61,484	65,965	69,689	70,263	70,561	337,962	67,592
합계	75,604	80,246	84,163	84,965	85,524	410,502	82,10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위탁병원 수진횟수 현황: 2019~2023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수진횟수	12.1	10.1	8.4	8.3	8.7	9.5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무공수훈자의 유배우자율, 통계청의 구간별 인구수·사망률, 국가 유공자 기준 진료횟수 및 감면진료비 단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